



물류센터 컨테이너 야드 에서 이동 중 지게차에 깔림



재해개요

'23.05.23.(화) 16:05경, 전남 목포시 소재, 0000 소속 근로자가
00해운(주) 물류센터 컨테이너 야드내
에서 화물검수 작업을 위해
이동하던 중, 컨테이너 운반을 위해 후
진하는 지게차(16톤)에 깔려
치료 중 사망함



발생원인

▶ 사고 발생원인

- (접촉방지조치 미실시) 지게차가 상시 운행되는 작업장소에서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 미실시
- (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미배치) 지게차 작업 장소 내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미배치
- (작업계획서 작성 미흡) 지게차 사용 시 전도, 깔림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미작성

예방대책

1 지게차와의 접촉방지조치 실시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,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, 지게차 운행경로나 작업장소에 출입금지 조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접촉위험 예방 조치 실시

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

- 지게차(차량계 하역운반기계)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고 운반하는 작업에 대해 지게차의 전도, 깔림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작업 진행
- 지게차와의 접촉 위험이 있는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 혹은 신호수(유도자)를 배치하여 재해발생을 방지

3 화물검수작업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

- 사업장 내 도보로 이동하여 진행되는 화물검수작업 특성상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부분의 표시 등 통로를 설치하고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